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30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3. 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 의원)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의 사용은 해수의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에 필요한 영양제의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상수온 등으로 인한 김양식업계의 피해와 김 영양제의 조속한 개발·보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김 영양제 개발·보급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관련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관한 현행법의 입법형식을 보면 개별 산업을 열거하기 보다는 김과 김 가

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조·가공 공정 등의 연구·조사 등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사업 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김 영양제 개발·보급사업도 기존 사업유형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고수온 내성이 있는 김종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상수온 대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은 참고할 수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